

林地所有移動의 歷史的考察

- 日政時代를 中心으로 -

權 五 福 / 강원대 교수

日政時代에는 國有林이 私有林으로 양도 된다는가 또는 私有林이 轉賣된다는가 하는 방법으로 林地의 所有移動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林地移動은 전적으로 農地나 草地造成과 같이 林地利用變化에 따르는 移動은 아니었으며 최근의 경우와같이 外部資本으로 인한 移動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不要存林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또는 연고지를 私有林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所有移動이었고 다음에는 간단히 얻은 林地를 轉賣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移動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林地移動의 特徵은 移動빈도가 많고 速度가 빠르며 移動動機가 단순히 經濟的인 면에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政治的인 면에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 당시의 林地移動狀況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원래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는 물론이고 高麗時代(918 - 1392)에도 원칙적으로는 林地의 私有禁止였다. 그러한 思想과 制度는 중국의 周時代(紀元前 1122 - 24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에서는 그때부터 土地公有에 기초를 둔 森林管理를 해내려왔다.

다만 다른점은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에 드러와 國土保全과 王室의 財源調達의 필요성때문에 國有林에 해당하는 禁山과

封山制度를 創設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禁山이란 保安林이나 또는 制限林에 해당하며 封山이란 王室財政을 위한 經濟林에 해당하는데 그러므로 그 당시의 우리나라 林野制度는 국민들이 共同으로 사용하는 森林과 국가에서 占有하고 管理하는 森林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후 李朝時代(1392 - 1910)에 드러와서도 封建制度를 유지하기위하여 禁山이라든가 封山の 範圍는 더욱 확대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사용할수 있는 森林面積은 점점 협소해 갔다. 禁山은 무수히 많이 생겼고 封山도 1592년경에는 전국에 635 개소이상이나 되고 1개소의 면적이 수만 ha에 달하는것도 있었다 한다.

한편 高麗時代에 형성되어 王室이나 王族들이 소유하던 農莊制度는 李朝時代에도 더욱 확대되었을뿐만 아니라 李朝 時代에 새로 형성된 建國功臣에 대한 私占許可制度 등으로 서서히 近代的 森林私有의 基盤이 구축되어 갔다.

그러나 日政에 드러가던 1910년경 까지 우리나라의 森林所有形態는 國有, 民有의 區分이 불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私有林이라하여도 地上物利用權만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禁山, 封山등 國有林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公山이었다.

이와같은 所有權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近代的 林業經營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고

일제는 우선 所有權區分등 각종 林野調査를 실시했으며 그 조사에서 國有林面積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i) 總森林面積 1,588만 ha, 國有林 949만 ha, 民有林 639만 ha로 國有林率은 약 60%.

ii) 國有林중에서 要存林이 543만 ha, 제 1種不要存林 97만 ha, 제 2種不要存林 309만 ha.

한편 不要存林처분은 191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27년까지 91,097건이 처리되어 1,334,000ha가 民有로 이양되었고 그 결과 國有林率은 50%로 감소했다. 그 후 다시 1927년부터 1934년 사이에 緣故林地 양도처분이 실시되어(1,045,000건에 2,773,000ha) 國有林은 다시 34%로 감소했다.

이러한 처분 이외에도 1927~1939년 사이에 조림을 성공시킨 國有林貸付者에게 양도처분한 面積을 가산한다면 1939년 현재 國有林面積은 526만 ha, 國有林率은 33%로 되어 불과 28년 동안에 國有林은 60%에서 33%로 감소했다.

그 후 農民들에게 양여된 林地는 經濟적으로 恐慌期였던 1929년을 전후하여 싼 價格으로 주로 일본의 資本家들에게 轉賣되어 갔다.

이와같이 林地가 일인들에게 빠른속도로 移動된 이유로는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으며 그 하나는 당시 우리나라의 林地價格은 일본에 비하여 대단히 賤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ha당 600원 정도로 매매되는 林地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15~30원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價値의 林地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價格의 1/20~1/40에 불과했다는 것

이다.

둘째이유로는 그 당시 林政擔當者들은 일인들에게 韓國林地를 구입하도록 적극 弘報했다.

朝鮮은 經濟적 大不況으로 林地를 葉가로 매매하고있으니 이 機會에 그 林地를 구입한다면 장차 큰 經濟的利得은 물론 이고 朝鮮統治의 促進에도 도움이되는 일이라고 선전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林地는 빠른속도로 일인들의 손에 集中移動 되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몇가지 예를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1935년의 통계를 보면 불과 0.3%에 불과했던 100ha이상의 소유자가 全體林地의 18.7% 되는 廣大한 林地를 所有하고 있었고 그것을 50ha이상으로 擴大할때 0.8%의 所有者가 全體林地의 25.9%를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林地가 지나치게 小數의 소유자에게 集中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私有林規模를 비교해보면 1人當 平均所有面積이 우리나라가 4.86ha, 일본이 2.4ha로 되어 우리나라의 所有規模가 일본의 약 2배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所有規模에 큰 着異가 나타난것은 일인의 資本進出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巨大森林地主가 나타나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935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5,000ha 이상을 所有하는 山主는 모두 36명이었다. 그중에서 일인이 29명이고 나머지 7명이 우리나라사람인데 가장 巨大한 所有者는 일본의 東洋拓殖KK(11.6만 ha), 다음이 역시 일본의 住友合資會社(8.5만 ha)와 三井合名會社(7.5만 ha)였으며 이에 비

하여 우리나라의 最高所有面積은 3.7만ha에 불과 했다.

한편 1933년 현재 全國農家 중에서 林地를 保有하고있는 農家は 불과 56%(林地所有農家 44%, 다른사람의 林地를 管理하고

있는 農家 12%)에 지나지 않았고 그당시 林地에 대한 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44%의 農家は 林地를 全연 保有하지 못 한채 지내야 했다.

가을철 산불防止 對備

- 全 山林公務員 非常勤務 突入 -

山林廳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11. 15 ~12. 15까지를 가을철 산불防止 期間으로 정하고 산불防止를 위한 非常勤務에 들어 갔다.

山林廳은 貴重한 山林資源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 市·道 및 營林署에 示達하는 한편, 지난 11. 1 에는 강원도 洪川郡 斗村面 長南里에서 헬기와 각종 장비를 동원하고 산불진화 機動 訓練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 30에는 전국 市道農林局長, 營林署長 會議를 召集하고 산불防止 대책과 重點推進 事項을 시달하는 자리에서 盧健一 山林廳長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全山林 公職者의 헌신적인 노력과 강력한 의지로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국민의 共感帶 造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強調하고 금년 가을철에는 산불을 最小化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促求하였다.

그런데 근년의 산불發生 추이를 살펴보면 계속 減少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88년

에 갑작스런 증폭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작년 冬季에 異常난동과 降雪量이 적었던 데에 原因이 있었던 것으로 分析된다.

○ 산불發生狀況

年度別 區分	'84	'85	'86	'87	'88	5年 平均	'89 春期
件數(件)	359	165	275	87	270	231	288
面積(ha)	1,164	363	3,417	191	878	1,203	1,635
材積(m ³)	1,873	781	14,453	243	3,383	4,147	3,024
被害額 (百萬元)	45	23	423	29	99	124	238

○ 原因別 發生狀況

(單位: 件)

年度別 區分	'84	'85	'86	'87	'88	5年 平均	'89 春期
計	359	165	275	87	270	231	288
入山者 失火	152	86	157	57	144	119	130
는발두령 燒却	66	28	48	15	32	38	94
이린이 불장난	50	28	26	5	15	25	9
省幕客 其他	7	3	16	2	14	8	20
其 (軍 事)	84	20	28	8	65	41	35
	(23)	(14)	(17)	(5)	(21)	(16)	(17)